

보 도 자 료

특수절도 사건

[2018헌마948 기소유예처분 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 온 점, 청구인 이외 다른 2명이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것이고 청구인은 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6개월 후 택배상자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19. 6. 28.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리○○, 조□□과 합동하여 2017. 12. 7. 21:30경 인천 중구 소재 피해자 거주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5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특수절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8. 8. 21. ○○지방법원 2018년 형제61454, 630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인정되는 사실관계

- 청구인(남, 25세), 리○○(여, 25세), 조□□(남, 31세), 피해자(여, 29세)는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 청구인과 리○○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12. 7. 21:00경 청구인과 리○○, 리○○의 남자친구인 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갔다.
- 그런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자, 리○○의 제안으로 그녀와 조□□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 같은 날 22:00경 리○○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아서 택배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다.
- 서울 소재 A대학교에서 4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마친 리○○은 위 택배상자 2개를 중국인 친구 청◇에게 맡긴 후 2018. 3. 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리○○은 2018. 6. 1.경 조○○에게 청◇로부터 택배상자 2개를 건네받아 피해

자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조□□은 같은 날 인천 소재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택배상자 2개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주었다.

●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소극)

- 청구인은 위 택배상자의 내용물이나 행방 및 반환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택배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사람은 리○○과 조□□이고 청구인은 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6개월 후 택배상자 2개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